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26호
2019년7월8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1. 시균형 1. 사살기
- 1. 있는심 1. 람중 1. 품격 1. 살기
- 1. 감는심 1. 는은 1. 는은 1. 는은
- 1. 감상나눔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동생높은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시경복지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정제지광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경관광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환경정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1. 주환 1. 문화정 1. 문화정 1. 문화정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682호 2019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3
공고(묘도동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19-1683호 2019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5
공고(구 돌산회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19-1689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437-2) /6
- 여수시 공고 제2019-1690호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9-1695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공고 /20

회 판									
--------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묘도동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4.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9. 7. 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묘도동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묘도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 고 내 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19. 4. 26.)
5. 공 고 기 간 : 2019. 7. 8. ~ 2019. 7. 22.(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6)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원	여수시 묘도동 10**	토지소유자(사망)
2	김*문	여수시 묘도동 10**	토지소유자(사망)
3	김*문	여수시 묘도동 13**	토지소유자(사망)
4	김*기	여수시 묘도1길 **	토지소유자(사망)

5	김*삼	여수시 묘도동 10**	토지소유자(사망)
6	김*길	여수시 묘도동 10**	토지소유자(사망)
7	김*준	여수시 묘도2길 **_*	토지소유자(사망)
8	김*기	여수시 묘도*길 *	토지소유자(사망)
9	허*순	여수시 묘도동 14**	토지소유자(사망)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구)돌산회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4.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보를 공시송달 합니다.

2019. 7. 8.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구)돌산회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06-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보 송달(재결일 : 2019. 4. 26.)
5. 공고기간 : 2019. 7. 8. ~ 2019. 7. 22.(15일간)
6. 재결서 정보 수령장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63)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임대식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12-10	
2	완도농업협동조합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88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437-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율촌면 조화리	437-2	23.4	3, 4	7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8.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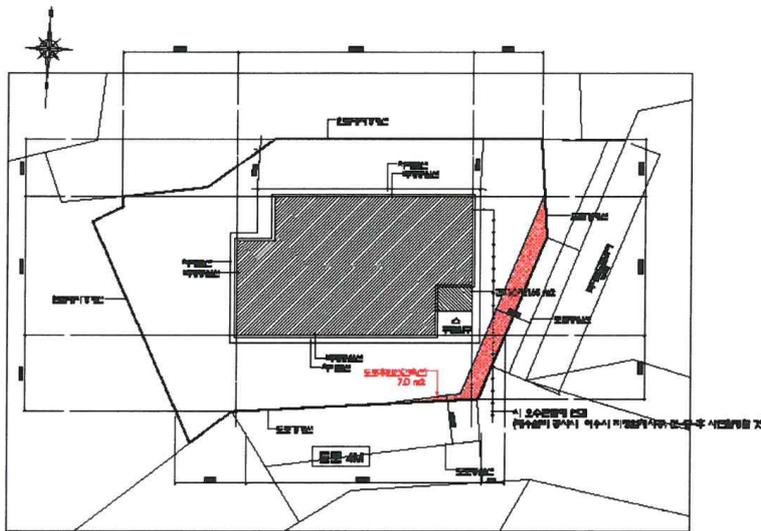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공 고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1. 10.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시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 등 운영 목적 및 위치에 맞게 조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상위법령(환경정책기본법 등)과 중복 및 저촉되는 조항 삭제(현행조례)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항 및 제26조(시민건강진단실시) 삭제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제9조(환경기본계획) 제4항 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호의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16조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만 별도로 조례에 반영 필요 없어 조항 삭제
 - 환경오염의 범위에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동법 제7조와 제4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조례내용 중복 및 타 조례에 근거가 있는 조항 삭제 (현행조례)**

-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개정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제10조 삭제
- 제1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는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삭제
-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제3항의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를 둔다는 내용은 별도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조항 삭제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법률위헌 소지가 있어 문구 수정(개정 안)**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3항~제4항,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항의 하단에 ⇒ “하여야 한다” 를 “노력하여야 한다” 로 문구 수정
- 제16조(환경상황의 공개) 제2항의 문구 수정
⇒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를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미비점 보완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개정 안)**

-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 제4조(시의 책무)→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제6조(시민의 권리)·제7조(시민의 책무)→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병합
- 제8조(학교·언론 등의 역할)→제7조
- 제9조(환경기본계획)→제8조/ 장기적인 환경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제11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제9조
-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제10조
-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제11조
- 제15조(규제조치)→제12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제13조
- 제18조(국가 및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제14조

-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제15조
- 제20조(환경상황의 공개)→제16조
-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등)→제17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의 규정 참조 위원회 명칭 변경
- 제22조(위원의 수당)→제18조, 제23조(의결 등)→제19조(심의결과 이행)
- 제24조(환경교육 및 홍보)→제20조
-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제21조, 제27조(의회 보고)→제22조

나. 주요조문내용

- 목 적(안 제1조)
 - 여수시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의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인한 피해 예방
- 정 의(안 제3조)
 -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등의 용어 정의 설명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책무
- 사업자의 책무(안 제5조)
 -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
- 환경기본계획(안 제9조)
 - 환경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환경정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 수립 확정
-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재정 지원 등(안 제11조)
 -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안 제13조)
- 환경상황의 공개 등(안 제16조)
 - 환경오염 분쟁발생시 신속 공정 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마련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 이행/ 조사결과 밝혀진 실태를 시민에게 필요할 경우 공개
-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 “환경위원회” 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참조 “환경정책위원회” 로 명칭 변경
 - 위원 15이내, 위원장 부시장/ 임기 2년/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현행조례는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

3. 조례 전부개정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19. 7. 8. ~ '19. 7.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 우)59689 여수시 시청로 1길 23(학동)
여수시장(기후환경과장)

나) 전 화 : 061)659-3801, 팩스 : 061)659-5823

다) 이메일(E-Mail) : @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여수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보고인 청정해역과 한려 수도의 빼어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수려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V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9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2.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나 연구

제12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필요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의결과 이행)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 내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의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회 V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V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회 V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위원회는 이 조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236	2019-18	패류양식 (비탁식)	10	소라 복산	2009.10.04. 2019.10.03.	2019.10.04. 2029.10.03.	-	여수시 소리면 복산리	육달천 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9. 7. 8.

여 수 시 장